

춘천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나355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나35500 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 10. 12 선고 2021가단25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C

변론종결 2023. 4. 13.

판결 선고 2023. 4. 27.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 10. 12. 선고 2021가단25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24.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24. 접수 제2656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하였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쓸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제10행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 인정사실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 D이 보유한 재산은 시가 3억 6,000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다. 반면, D은 그 당시 위에서 본 ①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 4,787,738원과 ②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5,000만 원을 부담하는 외에, ③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구상금채무 96,078,300원 등 상당수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고, ④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가 3억 3,600만 원이었다.』

○ 제1심판결 4면 제1행부터 5행의 "[적극재산 3억 3,600만 원 - 소극재산 최소 349,787,738원(=

원고에 대한 채무 최소 4,787,738원 + 피고에 대한 채무 최소 50,000,000원 +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 최소 95,000,000원 + 전세보증금반환채무 200,000,000원) < 0원, 실제 소극재산은 위 금액보다 많았다고 보인다]"를 "[적극재산 3억 6,000만 원 - 소극재산 최소 486,866,038원(= 원고에 대한 채무 최소 4,787,738원 + 피고에 대한 채무 최소 5,000만 원 +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 최소 96,078,300원 + 전세보증금반환채무 3억 3,600만 원) < 0원, 지연손해금까지 더할 경우 실제 소극재산은 위 금액보다 많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D과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고, 평소 알고 지내던 I가 D을 소개하여 D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I와 D이 피고에게 위조한 임대차계약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 원이라고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설정등기를 하였을 뿐 D의 무자력이나 채무초과 사실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설정등기 전에는 D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20. 3.경부터 I가 소개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이율(월 2%)의 선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중에는 J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J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J가 K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K보증보험이 2020. 5. 28. J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L). 따라서 피고는 I가 피고에게 소개한 사람들이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가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등 변제 자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I가 소개한 D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② 피고는 I가 소개한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이율 선이자로 돈을 대여하였으나, 위

사람들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거나 제때에 이자를 지급받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그럼에도 I가 소개한 D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사건 설정계약 체결 후 설정등기를 하였던 바, 피고는 D이 고이율의 선이자를 감수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만큼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조미연

판사이보라

판사고병용

별지